

教育委員會의 議事局長에게 所屬 地方公務員의 任用權 一部를 委任하고 教育廳의 財産管理와 其他 同條例의 引用文句의 一部 不合理한 事項을 整備 補完하려는 것입니다.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權限委任對象에 教育委員會 議事局長을 追加하여 教育委員會 所屬 6級以下 地方公務員의 教育委員會內의 轉補權을 委任하고 現在 地域教育長 및 高等學校長과 事業所長에게 委任된 教育監 所管 公有財産에 有償使用管理權을 無償使用管理權까지 擴大 委任하며, 저희 93年度 4月 13日字 教育委員會로부터 同條例에 不合理한 引用文句를 是正해 달라는 要求가 있어서 이를 整備 補完하려는 것입니다.

參考事項으로 同條例 改正에 따른 根據法令을 말씀드리면 地方教育自治에 關한法律 第36條와 地方公務員法 第6條입니다.

자세한 內容은 添附된 新구대조표를 參考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蘇中天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鄭文孝 專門委員 鄭文孝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監行政權限委任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1994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사유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인용문구 등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위임대상기관에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추가하여, 교육위원회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권 등을

위임함(안 제1조, 제8조)

○ 재산관리에 관한 위임사항중 “유상사용허가”를 “사용허가”로 함(안 제5조 제7호, 제6조 제6호, 제7조 제6호)

○ 기타 인용문구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함

4. 근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6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5. 검토의견

가. 현 황

• 현행 조례는 1991. 10. 30 조례 제 2835호로 제정되어 1992. 7. 15 제1차 개정을 거친 조례로서, 7개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 조례 제1조(목적)에는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하급교육청 교육장의 권한중 일부를 각각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설치하고, 위임받는 기관을 교육장, 소속학교장, 기타 소속 기관장으로서만 지정하고 있으나, 소속 기관장이 아닌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없음

• 지방공무원법 개정

1993. 12. 27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1994. 1. 26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조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감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 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나. 개정내용

• 제1조 목적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하급교육청 교육장의 권한중 일부를 위임할 때 수임기관은 본 조례의 상위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p>는 하급기관에만 위임하였으나, 교육위원회 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각급 학교의 명칭을 현행 조례는 제26호에 명시하고 있으나, 조문배열상 각급 학교 명칭을 제일 먼저 규정한 제7호에 명시하고, 그 이후 조항에는 7호 규정을 인용하도록 조문배열 순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음.</li> <li>• 현행 조례상에는 소관재산 유상사용 허가 및 대부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급기관의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위임하는 것은 행정능률의 향상이나 지방화 시대 추세에 걸맞게 개정하였음.</li> <li>• 제8조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 6급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권한을 위임하고 있음.</li> </ul> <p>다. 결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행정권한을 위임받는 수입기관을 하급기관 이외에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제정 체계상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5조의 조문배열 순서를 조정하고 제8조에 교육위원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정리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사료됨.</li> </ul> <p>.....</p> <p>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代理 蘇中天 다음은 本 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李永輔委員님 말씀하십시오.</p> <p>○李永輔委員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p> <p>첫째, 改正條例案 內容을 보면 第6條 所屬 學校長에게 委任하는 事項 中 第6號에 高等</p>	<p>學校에 한해서 所管 行政財産의 有償使用許可를 바꾸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高等學校로 限定하는 理由는 무엇이고, 高等學校만 限定한다면 其他 國民學校, 中學校等 各級 學校에 行政財産 使用許可를 教育長이 直接 行使하겠다는 뜻인데 그 理由를 答辯해 주시고, 예를 들어 住民들이 必要해서 高等學校 이외에 各級 學校 行政財産의 使用許可를 得하고자 할 때 每번 該當學校를  통해서 教育長에게 承認을 得하자면 住民들의 立場에서는 매우  불편할 뿐 아니라  결국 最終判斷을 該當 學校長이 여러 가지 狀況을 綜合해서 決定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오히려 行政의  번잡성을 招來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見解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리고 두번째, 第8條는 새로 新設하는 條項으로 教育監의 權限의 一部를 教育委員會의 議事局長에게 委任하는 것으로 委員會의 權限과 責任을 明確히 하고 委員會에 勤務하는 職員의 士氣振作, 그리고 地方自治의 活性化라는 側面에서 볼 때 아주 바람직한 方向이라고 本委員도 贊成을 합니다.</p> <p>다만 同條 第2項을 면밀히 살펴보면 任命權은 責任權과는 달리 限定된 概念으로 6級以下 別定職 公務員에 대한 任命權과 免職權만 委員會의 議事局長에게 委任하고 이보다 下位概念인 轉補, 休職, 復職, 懲戒, 兼任 等其他 任用權을 委任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教育委員會의 6級以下 別定職 公務員이라 한다면 速記士等 限定된 職種이고 또 人員도 몇 名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굳이 任命權 외에 任用의 모든 權限을 教育監이 直接 行使할 必要가 있는지 그 理由를 말씀해 주시고, 本委員의 判斷으로는 第3項에 技能職 公務員과 같이 6級以下 別定職 公務員에 대한 任命權 모두를 教育委員會 議事局長에게 委任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企劃管理室長 金鎮成 企劃管理室長 金鎮成입니다.</p>
---	---